

#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

(의안번호 제415호)

## 심사 보고서

1997. 3.

총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2. 12 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2. 14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3. 12 상임위원회 상정·부결

### 2. 제정사유

○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, 군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등으로 조성하도록 함. (안 제3조제2항)

나. 노인복지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%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도록 함. (안 제4조제3항)

다. 기금의 용도는 노인문제상담소 운영,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. (안 제5조)

라.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고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함.

(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)

마.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 (안 제8조)

#### 4. 검토 의견

-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어 기금의 조성방법,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군 출연금으로 조성할 것인지
- 답 : 군비 출연금 전액 부담으로 할 계획임.
- 문 :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인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적극 검토해 보았는지
- 답 :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음.
- 문 : 현재 상정한 조례안은 도 조례를 우리군 명칭만 바꾸어 제출한 조례안으로 노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, 군수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
- 답 : 그렇지는 않을 것임.

#### 6. 토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1997. 3.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였음.